

「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안전건설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안전건설과장 장근용)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한 내용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정”을 “임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정하고자”를 “임명하고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의 장은”을 “평창군 대책본부장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”을 “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,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”을 “명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,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